세무정보 /연재②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국세청

01 부가가치세 안내

01-1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02 종합소득세 안내

03 기준(단순)경비율제도

0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04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

05 홈택스(Home Tax)이용 방법

06 불복청구 절차

07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08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09 납세자 권리헌장

※이 책자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NTS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02 종합소득세 안내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종합소득세'를 참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10%, 복식부기시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간편장부 작성요령

산출세액의 계산

▶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09년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02-1 기준(단순)경비율제도

기준(단순)경비율제도란?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기준경비율·표준소득율"-"기준경비(단순경비)율"클릭

경비율의 적용방법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09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통상 다음연도 3월에 결정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②
⇒ ① 및 ② 중 선택가능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기준금액(08년 귀속~)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400만원

*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소령 제143조 제7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상기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0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납세의무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종업원 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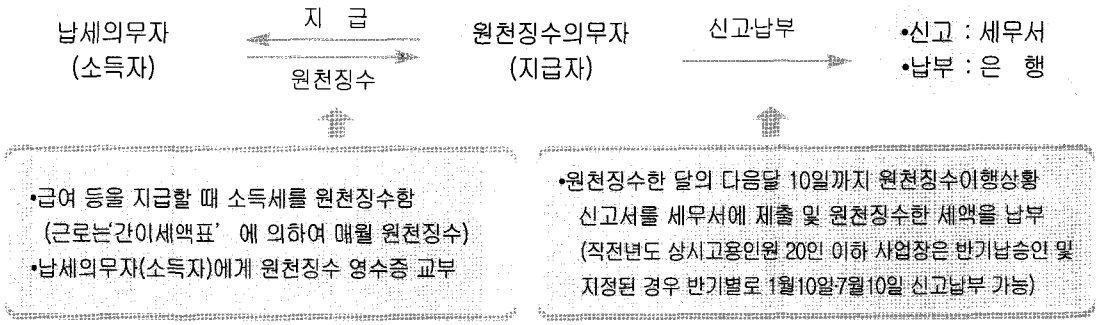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퇴직·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근로소득, 일용근로 이외의 경우 다음해 2월 말일)

▶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방법은 14쪽 참조
-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서식을 출력 가능
-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또는 "근로자 급여카드"를 인식시킨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2007.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

세무상담안내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있으면 다음의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고객불만 사항 및 세무상담에 대하여 성심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이용안내]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1588-0060

- 고충 · 건의 · 불만 · 칭찬은 1번
- 세무상담은 2번

[인터넷이용안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고객만족센터를 클릭하거나 직접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로 접속하면

- 국세행정 또는 세법에 고충 · 건의 · 불만 · 칭찬 – 『고객의 소리』
-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 – 『세무상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

-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집이나 사업장의 일반 유선전화(휴대전화 제외)로 대표번호 1577-0070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행정구역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등)에 관한사항은 해당시·군·구청에 문의하기바랍니다.

납세자를 국세청의
최우선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NTS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우110-705)